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67

제출연월일 : 2001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권의 우리 도 이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제1조)
- 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은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 운영 및 경영기술 지도,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 등으로 함(제3조)
- 다.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라. 센터에 대한 도의 운영비 보조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10조)
- 마.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의안전문 : 따로붙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청주시에 두며,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
2.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 운영 및 경영 기술지도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
4. 센터 지원시설 및 공용개발 장비 관리 운영
5.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등)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1. 국가나 충청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2. 충북지역 기술혁신과 첨단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 국·공립 연구기관

②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센터의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시설의 사업목적 또는 위·수탁계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②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인력) 수탁관리자는 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보조) ①수탁관리자가 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도지사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계약에 의하여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진흥시설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